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유해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 대기질 예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6명, 7급 6명, 9급 3명, 연구사 12명),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8명),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에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의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황사”를 “장거리대기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황사가”를 “장거리대기오염물질이”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장거리대기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관리 및 조사·연구

제14조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차세대 분광학기법 등 대기배출원 감시기법 개발

제15조제3항제5호 중 “수질측정망”을 “물환경측정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수질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6.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호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을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등에 대한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제8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광학장비 등 원격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
제28조제5항제6호 중 “지도·점검 관리”를 “지도·점검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의”로, “지방상수도사업 인가”를 “수도사업의 인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을 “상수도 사고 대응”으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도·점검”을 “지도·점검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상수도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16.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등에 대한 운영관리 및 허가조
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 단서 중 “제10호”를 “제10호와 동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의 개발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호의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
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술지원”을 “기술·
재정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등에 대한 운영관리 및 허가조
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분광학장비 등 원격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
별표 6 중 총계 “589”를 “5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87”로 하
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2”를 “94”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2”를 “9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87”을 “591”로 하고, 일반직 계 “581”을 “58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7”을 “9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1”을 “9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380”을 “39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74”를 “388”로 하며, 일반직 계 “374”를 “388”로 하고,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1”을 “73”으로,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7”을 “28”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88”을 “94”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5”를 “40”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3”을 “2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을 “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1”을 “20”으로 하고,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 다음에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9”를 신설한다.

별표 10의3 중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다음에 “환경주사 또는 연구사 1”을 신설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2”를 “11”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581”을 “62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79”를 “619”로 하며, 일반직 계 “579”를 “61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75”를 “9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3”을 “6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0”을 “56”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3”을 “25”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1”을 “28”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581”을 “62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79”를 “619”로 하며, 일반직 계 “579”를 “61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79”를 “9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9”를 “69”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5”를 “51”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8”을 “20”으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1”을 “28”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291”을 “3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0”을 “30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90”을 “306”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2”를 “4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0”를 “36”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33”을 “35”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5”를 “18”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293”을 “30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292”를 “308”로 하며, 일반직 계 “292”를 “30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6”을 “5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7”을 “4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28”을 “30”으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5”를 “18”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60”을 “64”로 하고, 일반직 계 “60”을 “64”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8”을 “9”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를 “3”으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을 “3”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61”을 “65”로 하고, 일반직 계 “61”을 “65”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를 “1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를 “3”으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을 “3”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159”를 “161”로 하고, 일반직 계 “159”를 “161”로 하며, 시설주사 6 다음에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2”를 신설한다.

별표 16의3 중 총계 “159”를 “161”로 하고, 일반직 계 “159”를 “161”로 하며, 시설주사 6 다음에 “시설주사 또는 연구사 2”를 신설한다.

별표 17의4 중 총계 “94”를 “98”로 하고, 일반직 계 “94”를 “98”로 하며, 4급 이하 “65”를 “67”로, 전문경력관 “28”을 “3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①·② (생략) ③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u> <u><신설></u> 2. ~ 17. (생략) ④ ~ ⑥ (생략)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10.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11. · 12. (생략) ⑧ · ⑨ (생략) ⑩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⑪ ~ ⑫ (생략)	제7조(생활환경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1의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 ~ 1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9. (현행과 같음) <u><삭제></u> 11. · 12. (현행과 같음)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8. (현행과 같음) <u>9.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물통합정책국) ① ~ ③	제7조의2(물통합정책국) ① ~ ③

(생 략)

④ 물이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6. ~ 25. (생 략)

⑤ (생 략)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②
(생 략)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의 측정 및 조사·연구

11. 삭 제

12. (생 략)

13. 황사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14. 황사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 황사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16.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
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대기
오염집중측정소 운영·관리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2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2. (현행과 같음)

13. 장거리대기오염물질-----

14. 장거리대기오염물질이 ---

15. 장거리대기오염물질피해 --

16. 장거리대기오염물질의 측정
· 분석을 위한 대기환경연구
소 운영·관리 및 조사·연구

17. 삭 제	18. (현행과 같음)
18.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
1. · 2. 삭 제	3. ~ 12. (현행과 같음)
3. ~ 12. (생 략)	13. <u>차세대 분광학기법 등 대기</u>
<u><신 설></u>	<u>배출원 감시기법 개발</u>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① · ② (생 략)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
5. <u>수질측정망</u>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 · 연구	1. ~ 4. (현행과 같음)
6. <u>수질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 계의 구축 · 운영</u>	5. <u>물환경측정망</u> -----
7. · 8. 삭 제	-----
9. ~ 11. (생 략)	6. <u>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 축 · 운영</u>
④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⑤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u>수질환경기준</u> 에 관한 조사 · 연구	⑤ -----
	-----.
	1. <u>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u> - --

2. ~ 9. (생략) 제27조(환경관리국) ① ~ ③ (생략)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1. ~ 15. (생략) <신설> 16. (생략) ⑤ ~ ⑦ (생략)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6. ~ 8. (생략) 제28조(유역관리국) ① ~ ④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경관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만, 제16호의 경우 <u>한강유역환경청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을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로 한다.</u> 1. ~ 15. (현행과 같음) 16. <u>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등에 대한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u>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분광학장비 등 원격 측정 가능한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u> 6.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유역관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	--

략)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정수장 <u>지도·점검 관리</u>에 관한 사항 7. (생략) 8. <u>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u>에 관한 사항 9. <u>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u> 등에 관한 사항 10. · 11. (생략) ⑥ · ⑦ (생략)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생략)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1. · 2. (생략) 3. 정수장 <u>지도·점검 관리</u>에 관한 사항 4. (생략)	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지도·점검 및 수도 시설 기술진단</u>----- ----- 7. (현행과 같음) 8. <u>수도정비기본계획의</u> ----- -- <u>수도사업의 인가 등</u>----- -- 9. <u>상수도 사고 대응</u>----- ----- 10. · 11.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지도·점검 및 수도 시설 기술진단</u> -----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5. ~ 15. (생략)

<신 설>

16. (생략)

③ ~ ⑤ (생략)

제33조(관할구역) 직제 제46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
34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
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4조(수도권 대기환경청) ①·②
(생략)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신 설>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4의2. 상수도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5. ~ 15. (현행과 같음)

16.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등에 대한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관할구역) -----

----- 제10호와 동
조제6항-----
-----.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1. ~ 15. (현행과 같음)

16.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

④ -----
-----, 다만, 제20호의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89</u>	<u>593</u>	+4
·	·	·	
·	·	·	
일반직 계	<u>583</u>	<u>587</u>	+4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			
무관 · 통계사무관 · 사			
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	<u>92</u>	<u>94</u>	+2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			
건주사 · 전산주사 · 환			
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2</u>	<u>94</u>	+2
·	·	·	
·	·	·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87</u>	<u>591</u>	+4
·	·	·	
·	·	·	
일반직 계	<u>581</u>	<u>585</u>	+4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			
무관·통계사무관·사			
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	<u>97</u>	<u>99</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			
건주사·전산주사·환			
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1</u>	<u>93</u>	+2
·	·	·	
·	·	·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80</u>	<u>394</u>	+1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일반직 계	<u>374</u>	<u>388</u>	+14
·	·	·	
·	·	·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u>71</u>	<u>73</u>	+2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보건연 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27</u>	<u>28</u>	+1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 연구사	<u>88</u>	<u>94</u>	+6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 · 기상연구사·보건연 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35</u>	<u>40</u>	+5

•	•	•	
•	•	•	

[별표 10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u>	<u>22</u>	+9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11</u>	<u>20</u>	+9
일반직 계	<u>11</u>	<u>20</u>	+9
·	·	·	
·	·	·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3		
<u>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u> <u>또는 환경연구사</u>	<u><신 설></u>	<u>9</u>	+9
·	·	·	
·	·	·	

[별표 10의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u>환경주사 또는 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 · 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2</u>	<u>11</u>	-1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1</u>	<u>621</u>	+40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79</u>	<u>619</u>	+40
일반직 계	<u>579</u>	<u>619</u>	+40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75</u>	<u>90</u>	+15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3</u>	<u>63</u>	+10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50</u>	<u>56</u>	+6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 ·	<u>23</u> · ·	<u>25</u> · ·	+2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 ·	<u>21</u> · ·	<u>28</u> · ·	+7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1</u>	<u>621</u>	+40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79</u>	<u>619</u>	+40
일반직 계	<u>579</u>	<u>619</u>	+40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79</u>	<u>94</u>	+15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9</u>	<u>69</u>	+10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45</u>	<u>51</u>	+6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 ·	<u>18</u> · ·	<u>20</u> · ·	+2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 ·	<u>21</u> · ·	<u>28</u> · ·	+7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1</u>	<u>307</u>	+16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290</u>	<u>306</u>	+16
일반직 계	<u>290</u>	<u>306</u>	+16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 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42</u>	<u>47</u>	+5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 설주사보	<u>30</u>	<u>36</u>	+6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 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33</u>	<u>35</u>	+2
·	·	·	
·	·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 .	<u>15</u> . .	<u>18</u> . .	+3
-------------------------------------	---------------------	---------------------	----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3</u>	<u>309</u>	+16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292</u>	<u>308</u>	+16
일반직 계	<u>292</u>	<u>308</u>	+16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 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46</u>	<u>51</u>	+5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 설주사보	<u>37</u>	<u>43</u>	+6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 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28</u>	<u>30</u>	+2
·	·	·	
·	·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 .	<u>15</u> . .	<u>18</u> . .	+3
-------------------------------------	---------------------	---------------------	----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0</u>	<u>64</u>	+4
일반직 계	<u>60</u>	<u>64</u>	+4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8</u>	<u>9</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2</u>	<u>3</u>	+1
·	·	·	
·	·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u>	<u>3</u>	+2
·	·	·	
·	·	·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u>	<u>65</u>	+4
일반직 계	<u>61</u>	<u>65</u>	+4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9</u>	<u>10</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2</u>	<u>3</u>	+1
·	·	·	
·	·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u>	<u>3</u>	+2
·	·	·	
·	·	·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9</u>	<u>161</u>	+2
일반직 계	<u>159</u>	<u>161</u>	+2
•	•	•	
•	•	•	
시설주사	6		
<u>시설주사 또는 연구사</u>	<u><신 설></u>	<u>2</u>	+2
•	•	•	
•	•	•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9</u>	<u>161</u>	+2
일반직 계	<u>159</u>	<u>161</u>	+2
·	·	·	
·	·	·	
시설주사	6		
<u>시설주사 또는 연구사</u>	<u><신 설></u>	<u>2</u>	+2
·	·	·	
·	·	·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4</u>	<u>98</u>	+4
일반직 계	<u>94</u>	<u>98</u>	+4
·	·	·	
4급 이하	<u>65</u>	<u>67</u>	+2
전문경력관	<u>28</u>	<u>30</u>	+2